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19호 2019. 10. 8.(화)



선	기관의 장
결	

조 례

제2534호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 3

제2535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14

제2536호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23

제2537호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 30

제2538호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39

제2539호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42

제2540호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47

제2541호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49

제2542호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54

제2543호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제2544호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63

규 칙

제1270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8

제1271호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79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34호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읍면 주

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주민총회 운영
2.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2.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3. 지방자치 활성화
4. 주민 참여 보장
5. 자율적인 운영
6. 정치적 중립 유지

제5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읍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3. 읍면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군의회 의원
- ③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자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의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 계획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60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사업장,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별로 예비위원을 5명 이내로 함께 위촉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⑤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군수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주민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

2.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안

3.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4. 그 밖에 지역 현안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주민총회는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2. 임시회의: 주민자치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주민총회는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1개월 전까지 심의 안건 등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결 결과 및 회의록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치계획(이하 “자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3. 그 밖에 주민참여에 관하여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제출받은 군수는 자치계획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자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자치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 지원)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공간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군수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0조(보험 가입)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등)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거창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주민자치회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2조 위원의 대우

나. 제15조 주민총회

다. 제18조 운영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1) 2019년도 예산 : 위원 수당 41,720천원

3. 미첨부 사유

가. 주민자치회 총회 개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75
----------	---------

제출연월일	2019. 9. 23.
제 출 자	행정과장

1. 제안 이유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5조)

1) 20명 이상 30명 이하 ⇒ 20명 이상 50명 이하

다. 위원 자격을 정함(안 제6조)

라.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을 위촉함(안 제7조제2항)

마. 위원 자치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6조제3항, 제9조, 제13조)

1) 주민자치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2) 사익추구 금지 등 해촉 사유 강화

3) 외부 감사 선임

바.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신설함(안 제15조, 제16조)

사.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제20조)

1)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2)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보험 가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41,72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25.~8. 14.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
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35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를 “관내 기업에서”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산업·농공단지 내 고용
증대를 위하여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② (생략) ③ 군수는 <u>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u>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u>관내 기업에서</u>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4조의3(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u>산업·농공단지 내 고용 증대를 위하여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별지 제2호서식]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체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남/여)	
	소 재 지	거창군						
	종업원수	명(남: 여:)		주 생산품				
	연 락 처	부 서			담 당 자	직 위		
		전 화				성 명	(남/여)	
		팩 스				휴대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참가실적	최초신청(), 참가(CECO 회, 국내전시 회, 국외전시 회)							
전시회 (박람회) 참가사업 계획서	전시회명							
	개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일간)				
	개최장소							
	참가품목							
	참가부스	부스		총 면 적	제곱미터			
	참가목적							
사업비 집행계획	신청금액	금 (₩)						
	항목	내역	재원내역(단위/원)				그밖에	
			계	군보조	자부담	그밖에		
당사는 위와 같이 전시(박람회)에 참가하고자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대 표: (인)				
거 창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안 제24조제3항, 제24조의3)

- 1) 관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확대
- 2)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신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 비용		455,000	526,000	526,000	526,000	526,000	2,559,000
세출	기숙사 임차료 지원	322,000	322,000	322,000	322,000	322,000	1,610,000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133,000	204,000	204,000	204,000	204,000	949,000

3. 관련 의견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전입장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인구 증가 및 기업의 고용안정화 도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 10개사 × 1,700천원 × 12개월 = 204,000천원

2)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확대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01
----------	----------

제출연월일	2019. 9. 0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내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범위 확대(안 제24조제3항)

1)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관내 기업

나.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근거 신설(안 제24조의3)

1)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임차료 일부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455,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16.~8. 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

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성별구분항목 신설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36호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각 호에 해당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한다.

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3. 다른 시·군에서 전입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지원 시기는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관련조문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소계		360	360	360	360	360	2,425
세출	균비	360	275	180	180	180	1,800
세입	도비	-	85	180	180	180	625

3. 관련의견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교복구입비 : 평균 1,200명 × 300천원 = 360백만원

2. 신입생 예상인원(2019. 1월 인구현황 기준)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계	1,162	1,101	1,133	1,024	1,011	
중학생	465	567	569	502	475	2,578
고등학생	697	534	564	522	536	2,853

※ 교복 미착용 학교 현황 : 거창고, 셋별중, 웅양중, 거창중 고제분교,
거창중 신원분교

작성자 : 거창군 인구교육과

거창군 교복 지원 조례

(권재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76
----------	---------

발의일자	2019. 9. 03.
발 의 자	권재경,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금액·절차를 정함(안 제3조~제6조)
- 다.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정함(안 제7조)
- 라. 환수를 정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 「전자정부법」 제36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 추경예산 반영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4.~9.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37호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박물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박물관자료의 구입) ①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
- ③ 불법적인 박물관자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자료는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 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 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제7조(박물관자료 관리 및 보고)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박물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박물관자료를 점검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

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행위제한) ① 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증 증 서

자료명:

성 명:

주 소:

귀하께서 귀중한 자료를 거창박물관에 기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창박물관에서는 귀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박물관자료의 활용과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위 문구는 사안별 내용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박물관자료 카드

자료번호		분류번호		소장구분		현존여부		
명 칭	(한글)				수 량			
	(한자)							
	(영문)							
국적/시대								
재 질								
용도/기능								
크 기								
문양/장식				무게				
명 문	구분			내용				
발굴일자				출토지				
보존처리								
자료상태				전시순위			입수일자	
입 수 처								
입수연유								
가 격			보험			문화재지정		
특 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	원판							
등록일자			기록자			입력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사진 </div>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자료 대장

(앞면)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소장 연월일	소장 경위	출 처	크기 (센티미터)	구조 · 특징	참고사항	
1											
2											
3											
4											
5											
6											
7											
8											
9											
10											
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

(뒷면)

사진첨부란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4호서식]

박물관자료 증감 보고

구분	금속 金屬	옥석 玉石	토도 土陶	나무	지류 紙類	그 밖에	총계		
							금년	전년	증감
수량 (점)									

증감내역	
증감사유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02
----------	----------

제출연월일	2019. 9. 0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박물관자료 구입·기증·관리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군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박물관 위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정함(안 제2조~제4조)

다. 박물관자료 구입 기준을 정함(안 제5조)

- 1) 박물관자료 구입계획 수립, 공개구입 원칙
- 2) 수집자료 화상공개 원칙

라. 박물관자료 기증·기탁을 정함(안 제6조)

- 1) 무상기증 원칙,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발급
- 2) 기증자에게 예우차원에서 감사패 전달

마. 박물관자료 점검 및 보고를 정함(안 제7조)

바. 차별조항 삭제 정비함(현행 제10조·제11조)

- 1)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제한
- 2) 정신질환자 입장 제한

사. 법령 재기재 사항 등 삭제 정비

- 1) 박물관 업무(현행 제5조)
- 2) 배상(현행 제12조)
- 3) 운영위원회 법률 명시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4.~8. 2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38호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 조례 (이재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77
----------	---------

발의일자	2019. 9. 03.
발 의 자	이재운,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권재경,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거창군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지 지원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제2조)

나.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 및 보급 등 군수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을 정함(안 제4조)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라. 사회복지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노력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4.~9.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39호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작업 참여자”란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용자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이하 “농업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

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상시고용인력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시설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2.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3.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 사업
 - 가. 숙식비,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등
 - 나. 보험료, 안전용품 제공
 - 다.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작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 농가,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 선별장 등
2. 농업근로자

제8조(지원 신청) ① 제7조제1호의 사용주는 제6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을 마친 후 센터에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상시고용센터 운영 및 농작업 참여자 지원
- 나. 관련조문 :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도비	36	36	36	36	36
군비		114	114	114	114	114	570
소계		150	150	150	150	150	750

3. 관련 의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기준)

- 1. 협동조합 운영인건비 : 74백만원
- 2. 출퇴근운송사업비 : 29백만원
- 3. 관외인력유치 알선사업비 : 47백만원

작성자 :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04
----------	----------

제출연월일	2019. 9. 0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규정과 법령 재기재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력센터 지원 사업 확대 신설(안 제6조)

- 1) 숙식비, 안전용품 제공
- 2)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법령 재기재 사항, 사문화 규정, 용어 등 정비(조례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14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6.~8. 2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40호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

의안 번호	2019-105
----------	----------

제출연월일	2019. 9. 0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 이유

기존에는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17. 1. 28.)으로 삭제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항이 기관위임사무로 됨에 따라 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2. 주요 내용

가.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11.~7. 3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41호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충전시설의 구축에 관한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
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4. 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민과 전문가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 및 친환경자동차법 제10조·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되는 자동차는 신규등록된 전기자동차로 함
2. 지원금액은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동종 또는 동급차량)의 최종 판매가격의 차액으로 함
3.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경비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설치·운영
2.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군수는 배터리 지원의 경우 자동차회사 무상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정하여 배터리 교체 가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부터 거창군에 2년 이상 등록된 차량에 한정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군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지원

나. 관련조문 : 제5조(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총 비용	75	75	75	75	75	375
균비						

산출근거 : 25대×3백만원 = 75백만원

3. 관련 의견

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작성자 : 환경과장 이덕기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

(심재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78
----------	---------

발의일자	2019. 9. 03.
발 의 자	심재수,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권재경,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전기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조·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75백만원 확보 예정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4.~9.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붙임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42호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기준·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해보상액 =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유사 농작물등에 대한 거창군 농산물 도매
 시장 경락가격 × 피해면적 × 피해율

제3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우선 및 제외 대상) ① 군수는 농작물등 피해 보상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70세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영세한 농가 등 군수가 우선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작지에서 발생한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1.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2. 사망: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적용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인명피해 보상액)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1.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2. 사망: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15백만원(상해 5, 사망 10) 정도로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환경과장 이덕기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06
----------	----------

제출연월일	2019. 9. 0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작물등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3조제2항)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경작지에 발생한 농작물등 피해는 보상 제외

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액 변경함(안 제4조)

1) 현행 : 부상 또는 사망 시 최대 50만원

2) 변경 :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가) 상해 :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나) 사망 :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다. 그 밖에 법령 내용을 확인·재기재한 내용 삭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5,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18.~8. 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43호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p> <p>3.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p> <p>②~③ (생 략)</p>	<p>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p> <p>3. (현행과 같음)</p> <p>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p> <p>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p> <p>②~③ (현행과 같음)</p>

거창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권재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19-79
----------	---------

발의일자	2019. 9. 03.
발 의 자	권재경, 이흥희,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이재운, 최정환,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김태경 의원

1. 제안이유

군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연지역을 확대하고, 상위법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이 「학교보건법」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동 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제2호)
- 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안 제4조제4호)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도로교통법」 제12조
- 나. 예산조치 :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9. 9. 4.~9.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조례 제2544호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지원) ① 거창군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주사무소의 소재와 회원의 주소가 거창군에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한 차례 이상 보고를 하게 하고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군비	150	150	150	150	150	750

나. 관련 의견

국가시책과 생활스포츠 저변확대, 엘리트스포츠 활로 개척 및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0년 기준)

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 150백만원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현 화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의안 번호	2019-103
----------	----------

제출연월일	2019. 9. 05.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및 대상을 정함(안 제2조)

- 1)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 2) 대상 : 주사무소의 소재와 회원의 주소가 거창군에 있는 스포츠클럽

나. 지원 사업을 정함(안 제3조)

-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 다. 지원신청을 정함(안 제4조)

라. 지도·감독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5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2.~7. 22.

나) 예고결과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거창스포츠클럽 김진옥	<p>○ 입법예고안 제2조(스포츠 클럽 지원) 제2항 지원범위에 대한 내용</p> <p>- 이 조례의 목적은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진흥법」의 스포츠 클럽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p> <p>- 지원 범위는 예산(경비), 공공체육시설 및 인적자원(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내용도 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p>	<p>○ 스포츠클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2030 스포츠비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p> <p>○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p> <p>○ 법에서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지원근거의 명확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의 의견을 반영함</p>	의견 반영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규칙 제1270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

제6조제1항 중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관내 기업”으로 “산업단지 내”를 “관내”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24조의3에 따른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의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 차량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연간 30백만원 이내

2. 차량종류: 11인승 이상

3. 지원기간: 10년 이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탁월한 지도력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 2. 시설투자,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근로자 사기양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5. 수출증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②~⑤ (생략)</p> <p>제6조(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u>산업단지 내 중소기업</u>”이란 신청일 현재 <u>산업단지 내</u>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2조(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 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탁월한 지도력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 2. 시설투자,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사람 4. 근로자 사기양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5. 수출증가,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7. <u>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가정양립 근로환경 조성</u>에 기여한 사람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6조(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u>관내 기업</u>”이란 신청일 현재 <u>관내</u>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24조의3에 따른 <u>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의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u></p>

할 수 있다.

1. 지원금액: 차량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연간 30백만원 이내

2. 차량종류: 11인승 이상

3. 지원기간: 10년 이내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남/여
(2) 생년월일		
(3) 주 소		
(4) 직 업	(5) 소 속	
(6) 직 위	(7) 등급(직급·계급)	(8) 근무기간 (수공기간)
(9) 공적요지(50자 내외)	(10) 공적분야코드	
(11) 추천훈격		(12) 추천순위
조 사 자		
(13) 소 속		(14) 직 위
(15) 직 급		(16) 성 명
		(남/여)
<p>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요 학력 및 경력

(17) 년 월 일	(18) 학력·경력	(19) 년 월 일	(20) 학력·경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21) 년 월 일	(22) 내 용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공 적 사 항

[별지 제4호서식]

회 사 소 개 서

1. 일반현황

업 체 명		대표자	(남/여)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자 본 금	백만원	종업원수	명(남: 여:)
연간매출	백만원	연간수출	천달러(수출비중 퍼센트)
회사규모	대지(제공미터)		
	건축물(제공미터), (자가, 임차)		

2. 수상경력

수 상 일 자	수 여 기 관	수 상 명

3. 특기사항

(정부·기관·단체 등의 승인·인정·선정사항, 기술개발·제휴·해외투자 등의 사항)

일 자	주 요 내 용

4. 회사연혁

연 도	주 요 내 용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안 제6조제1항, 제8조)

- 1) 관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확대
- 2)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신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 비용		455,000	526,000	526,000	526,000	526,000	2,559,000
세출	기숙사 임차료 지원	322,000	322,000	322,000	322,000	322,000	1,610,000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133,000	204,000	204,000	204,000	204,000	949,000

3. 관련 의견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전입장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인구 증가 및 기업의 고용안정화 도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 10개사 × 1,700천원 × 12개월 = 204,000천원

2)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확대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김성운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9-66
----------	---------

제출연월일	2019. 8. 26.
제 출 자	미래전략과장

1. 제안이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가 개정되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을 신설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범위 확대(안 제6조)

1)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관내 기업

나.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신설(안 제8조)

1) 지원금액 : 차량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연간 30백만원 이내

2) 차량종류 : 11인승 이상

3) 지원기간 : 10년 이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23조

2)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24조, 제24조의3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455,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16.~8. 5.

나) 예고결과 : 의견 있음(결과 요약서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

가) 제2조제2항제7호 신설

나) 별지 제3호·제4호·제7호서식에 성별구분항목 신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주) 지에프 에스 대표 이문규	○지원규모 연간지원 금액 확대요청 - 차량 임차료의 50퍼 센트 이내, 연간 60백 만원 이내	○타 시·군 지원현황을 보면 연간 통근버스 운임의 50퍼센트, 연간 20백만원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관내 통근버스 운영기업과 타 시·군 지원 현황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함	의견 미반영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0월 8일

거창군 규칙 제1271호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거창군수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대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전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전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전에 대한 결과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검토의견
4. 검토 결과

제13조(위원 수당) 예산 범위에서 출석 또는 서면 심의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 부터 기산한다.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의안 번호	2019-71
----------	---------

제출연월일	2019. 8. 26.
제 출 자	안전총괄과장

1. 제안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기관위임사무 추진을 위해 거창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1) 기관위임 사무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정함

나.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

-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사항 :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다. 구성 및 임기를 정함(안 제3조)

-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 , 부위원장은 안전총괄과장
- 2) 위원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부서장 중 군수가 지명,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 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을 정함(안 제4조·제5조)

마. 위원장 직무, 그 직무대행을 정함(안 제6조)

바. 운영을 정함(안 제7조)

- 1)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회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사. 간사를 정함(안 제8조)

아. 의견청취, 현지조사를 정함(안 제9조·제10조)

자. 위원의 의무, 심의결과 결정 및 보관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 1) 심의 결과는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결정
- 차. 수당을 정함(안 제13조)

- 1) 서면심의회 수당을 명확히 규정

카.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나. 예산조치 : 위원회 수당 5,6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23.~8. 13.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8.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세안길 70 등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길 11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길 110	2009-04-01	2019-10-08	대추나무가 호수처럼 울창한데서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길 11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대초길 112	2009-04-01	2019-10-08	대추나무가 호수처럼 울창한데서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 반영	
3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645-4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세안길 70	2009-04-01	2019-10-08	임진왜란 때 세상이 편안하게 피난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8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97	2012-05-22	2019-10-08	승강기산업공장이 위치하는 길을 반영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0월 4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2. 개정이유 :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공공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재무개선을 위하여 공공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요금인상
 -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제15조 별표 서식 개정
 - 별표 1 :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4. 입법예고기간 : 2019. 10. 4. ~ 2019. 10. 24.
5.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거창군 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붙임 의견제출서 참고

다. 의견제출하는 곳

- 1) 주 소 : (우)5012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 2) 전 화 : 055-940-8412
- 3) 팩 스 : 055-940-840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시행규칙”을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은 공포일 이후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감면) ① (생략)</p> <p>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u>시행규칙</u>으로 정한다.</p> <p><u>제33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6조(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면대상이나 감면절차 등은 <u>조례시행규칙</u>으로 정한다.</p> <p><u><삭 제></u></p>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가. 하수도 사용업종은 「거창군 상수도급수 조례」의 업종구분표에 준한다.
- 나. 상위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다.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하여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업종 구분	사용량 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현 행	개 정 안
가정용	1~20	<u>140</u>	<u>160</u>
	21~30	<u>190</u>	<u>220</u>
	31이상	<u>250</u>	<u>290</u>
일반용	1~30	<u>170</u>	<u>200</u>
	31~50	<u>210</u>	<u>240</u>
	51~100	<u>250</u>	<u>280</u>
	101~300	<u>290</u>	<u>330</u>
	301이상	<u>360</u>	<u>420</u>
산업용	1	<u>170</u>	<u>200</u>

관련법령

□ 「하수도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4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65조(사용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 「하수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 2017. 10. 24] [법률 제14917호, 2017. 10. 24, 일부개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19. 7. 9] [대통령령 제29952호, 2019. 7. 9, 일부개정]

-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견18-0025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8. 3. 13.
<p>• 질의요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p> <p>•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p> <p>반면, 「지방자치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p> <p>~이하생략~</p>					

거창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안)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사업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사업내용
 -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통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 확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욕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권역별 사업추진 : 수행기관별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및 접근성 확보(3권역 3개소)

구 분	해 당 권 역	수행기관
1권역	거창읍(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장팔리, 정장리)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1개소
2권역	거창읍(대동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주상면, 가조면, 가북면, 웅양면	1개소
3권역	거창읍(상림리, 중앙리, 가지리)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고제면	1개소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1년)

2. 신청자격

- **자격요건**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전체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만 한함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대상) 동일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적용일: '20. 1. 1.)
 - ※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심사배점을 달리 함.

- 권역별 수행기관 모집

- ※ 하나의 법인에서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에 참여 가능, 복수의 다른 권역에 각각 다른 시설로 공모 참여 가능

- **시설기준** :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상담공간,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함.

확보필요공간	기 준	규 모
사무공간	전용공간	기관의 사정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판단
상담공간	전용공간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예를 들면 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연간 대여 계획 등)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 가능 여부 판단

3. 신청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10. 4.(금) ~ 2019. 10. 18.(금)
- 접수기간 : 2019. 10. 14.(월) ~ 2019. 10. 18.(금)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함.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접수처 : 거창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

4. 제출서류

- 운영 신청서 1부
- 법인 일반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1부
- 약약서 1부

5.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공성, 지역사회네트워크(지역자원 발굴·연계), 효과적인 사업수행능력(시설기준, 유사사업 수행경험, 전문성 등)
 - ※ 최소 기준 점수(40점이상) 이상 충족 시 선정함.
- 선정방법 : (가)거창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권역별 신청자가 1개 기관(법인)의 경우 종합검토 후 선정여부 결정
 - 권역별 신청자가 2개 기관(법인)이상일 경우, 심사기준표에 의한 다득점 신청자 선정
 - 특정권역에 신청이 밀집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는 경우 다른 권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결과통보
 - 발표일 : 2019. 10월중(예정), 개별통보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게재
 - 사업수행 위탁관리 협약 및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 확정

6. 기타사항

- 수행기관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로 실시하므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이외에 추가 자료 요구 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행 기관으로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 등에 대한 면접 또는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사항 발견 시 심의에서 제외하고, 선정된 뒤 발견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선정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 확인(사무실, 사업 운영 장소)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시에 제출한 모든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서 접수는 2019. 10. 18.(금) 18:00까지이며 시간 경과 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거창군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940-3121)로 연락 바랍니다.
-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거창군수

-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위반 과태료 감경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9.10.7. ~ 2019.10.22. (15일)
- 공시송달 대상자

면허종류	성명	면허번호	주 소	반송일	반송사유
굴착기	임**	경남 18-1997-01**-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군봉1길 ***-**	2019.10.1.	이사감
지게차	이**	서울 09-1994-00**- **	경남 거창군 웅양면 산포우랑길 ***-*	2019.10.1.	수취인 미거주
굴착기	정**	경남 27-0990-00**-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울리 ***	2019.10.1.	이사감

- 과태료 미납시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건설담당(☎055-940-35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19 - 1232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8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안내엽서를 일반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엽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7. ~ 2019. 10. 22.(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 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법적근거 : 건설기계 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5. 공시송달 대상자

면허종류	면허번호	성 명	주 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3톤미만지게차	경남 27-2013-00** -**	신**	경상남도 거창군 주상면 당대고개길 *	이사감	2019.9.24.
3톤미만지게차	경남 27-2001-00** -**	임**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치내길 **	주소불명	2019.9.24.
3톤미만지게차	경남 27-2001-00** -**	최**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 ***호	이사감	2019.9.24.
지게차	부산 27-2004-00** -**	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변로5길 **	수취인불명	2019.9.24.
굴착기	경남 27-2003-00** -**	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양4길 **	수취인불명	2019.9.24.

6.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거창군 건설과 건설담당(055)940-3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7

거창군수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 방지를 위하여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운영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

거 창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설치목적 : 차량 운행속도 저감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
- 사업명 :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설치규모 : 무인과속단속카메라 3대
- 설치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사병리 1429번지 주변 (창촌마을 앞 양방향)
 - 경남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487-2번지 주변(지하마을 앞 단방향)
- 주관부서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055-940-3388)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행정절차법 제46조

3. 공고방법 :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9년 10월 7일 ~ 2019년 10월 28일(22일간)

5. 의견제출

-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 제출기관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교통담당)
 -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 전 화 : 055-940-3388
 - FAX : 055-940-3349
 - E-mail : panpan55@korea.kr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장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장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무인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장소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